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안내책자 p 33. 참조)
- 본 안내 책자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04
0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05
02 지원 내용	06
03 지원 요건	07
04 취업지원 대상자	08
05 지원이 안되는 경우	13
06 지원체계	17
07 지원인원 한도	18
08 부정수급 제재 조치	19
09 제출서류	20
별첨 1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규정	21
별첨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27
별첨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취업지원프로그램	30
별첨 4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31
별첨 5 취업희망풀 입력 관리	32
별첨 6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33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사업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대상

실업자 신규 채용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요건

-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프로그램은 안내책자 p9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지원대상은 안내책자 p12 참조)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60만원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에 대하여는 최대 2년 지원

신청 및 접수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지원절차

지원 대상자
채용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

(사업주)



장려금 신청

(사업주)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0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의 사업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장려금	-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기업당 (설비투자비 용자) 10억원 한도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1억원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02 지원 내용



01 지원 금액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지원함
-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02 지원 주기 및 기간

-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지원
-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6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미지급)

지원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경과 후 1회차 지원금(360만원 한도) 신청, 12개월 경과 후 2회차 지원금(360만원 한도) 신청

-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3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800만원인 경우 360만원까지 지원 가능

대규모기업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경과 후 1회차 지원금(180만원 한도) 신청, 12개월 경과 후 2회차 지원금(180만원 한도) 신청

-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1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800만원인 경우 180만원까지 지원 가능

03 지원 요건



▣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하나,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셋,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01 구직자(실업자)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함
-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참여자가 구직등록을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 구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02 사업주 지원요건

- 구직자(실업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04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 대상 구직자(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되는 사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곤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사람

01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참여하면 그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을 인정
 - 이수자격이 인정되는 기간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지원이 됨
 - 이수자격 인정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세부 인정요건>에 따라 판단
 - 이수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이수자격을 유지하나, 본인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이수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이수자격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므로 12개월 이내에 고용된 경우에 지원이 되고, 12개월이 지나서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에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되어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최종 이수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이수자가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세부 인정요건』

연번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II 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019년 1월 이후 참여하여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지원 • I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2020년까지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연번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전직스쿨에 참여한 사람은 2020년까지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 2019년 1월 이후 참여하여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지원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0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그리고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지원이 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인정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증빙서류
1.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2019-33호) 별지 2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 중증장애인확인서(한국장애인공단 발급) - 장애인등록카드(장애인 개인 소지) - 국가유공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보훈관서 발급)
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②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 소송 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 가족 증명서’
3.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 확인

05 지원이 안되는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②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이상인 사람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 제외된 경우는 지원 가능

-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대규모기업이 고용한 경우(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워크넷으로 확인)
- ⑥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지원기준 → '19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 지급건부터 적용

-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를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한 이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인 방법

- (방법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www.hifive.go.kr)에서 조회 가능
- (방법②) 학교 또는 해당학교 관할 교육청에서도 확인 가능

2/3 출석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기업은 해당 학교로부터 2/3 출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⑦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구직등록 요건 적용기준

구분	기존	개선('19.10.17)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지원제외 사업주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 ③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④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관련되는 사업주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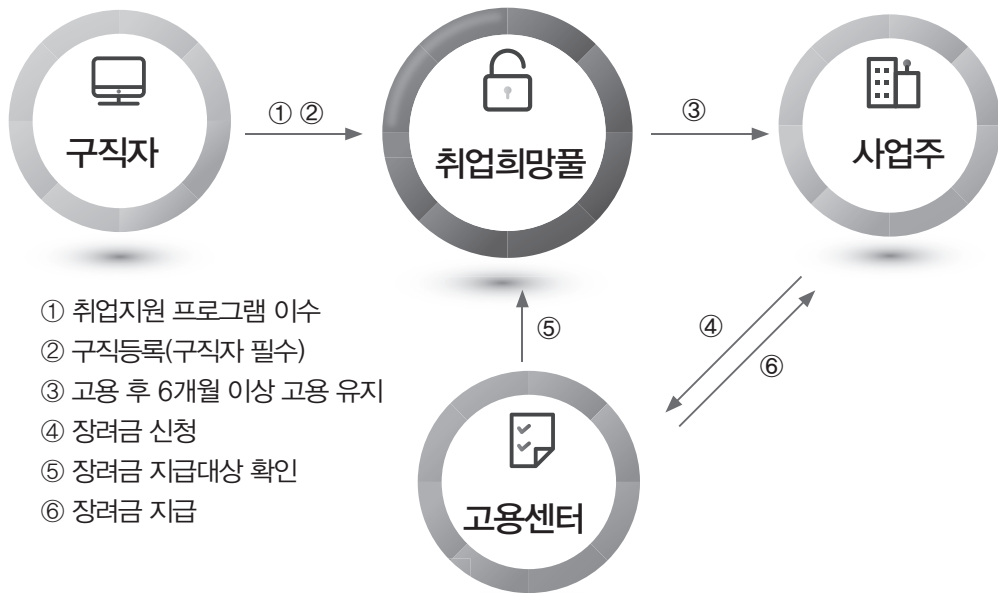


⑤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감원방지의무 부과 이유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전·후 일정 기간 근로자들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
감원방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의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기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부적응(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06 지원체계



07 지원인원 한도



지원 인원 한도

- ①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 각각 해당되는 인원에서 고용일 직전 3년간 지원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까지 지원)

지원예시

'20.1.1.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19년말 피보험자수 100명)가 '17, '18년, '19년 각 3명 지원받은 경우 20년 지원인원 한도는 21명임(30명-9명)



08 부정수급 제재 조치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지급제한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원받으려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부정수급액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제한 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추가징수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에 제재 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형사처벌('20.8.28. 시행)

-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신설)

09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주확인서(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별첨 1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삭제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②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7. 3.>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 24개월분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2013. 1. 25.>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 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 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 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1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law.go.kr>)에서 검색 가능



별첨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 우선지원 대상기업 ^①		☐ 중견기업 ^②		☐ 대규모기업	
	☐ 감원방지 의무 위반 ^③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다음 2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명		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피보험자수 30% 한도, 3년 이내 지원금 지원 받은 근로자 수 제외 ^④)			
	☐ 도서지역 거주자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순환제)	증가 근로자		명 ^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⑥		1차	원	2차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 ^⑦		원	
☐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 ^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자격·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지원한도 인원 산정

- ④ 지원한도 인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에서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수
-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⑥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 중증장애인 ③ 여성가장 ④ 섬 지역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④ 해당번호 기재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1	성취 프로그램	장기구직자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
2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 수급자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3	(WIND)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
4	단기취업특강	구직급여 수급자 등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 수집 등
5	일자리희망프로그램	-	고용센터에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식으로 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6	단기집단상담	구직급여 수급자 등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7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만19-34세)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 계획 수립
8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9	행복내일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10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15~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11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12	성장(성실) 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기술 향상
13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14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 군인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15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 취업상담·진단 - 직업훈련 - 취업알선
16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층	- 전직스쿨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 등
17	조선업 희망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퇴직자	- 집단상담 프로그램 - 단기 취업특강 등

※ 고용센터에서 운영(위탁 포함)하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한함. 단, 위 프로그램은 이수증 및 확인증으로 인정 가능

별첨 4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별 주관부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주관부서	연락처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별첨 5참조)	고용노동부	044-202-7319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02-2100-6206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044-202-7465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여성가족부	02-2100-6317 02-2100-6314
내일이룸학교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054-911-9245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031-728-7054 031-728-7116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활근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044-202-3079
제대군인 기본교육 및 취업워크숍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044-202-5737
직업교육훈련			
재도약프로그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044-202-7465
일반고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044-202-8036
지방자치단체 위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044-202-7218

「취업희망 폴」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임. 구직자가 취업희망 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고(이수 요건 충족)
- 구직등록을 해야 함

이수요건

-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명단을 입력해야 함
- 이수자 등록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구인검색을 해도 해당 이수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임을 알 수 없으므로 이수자 명단은 최신 자료로 유지·관리해야 함
- 반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의 경우 이수자 명단 수정이 늦어지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알고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수자 명단을 수정해야 함

구직등록 요건

-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워크넷과 분리된 자체 구직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희망폴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은 워크넷 ID를 발급받아 워크넷에도 구직등록 사실을 입력해야 함

주의사항

- 취업희망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반대로 취업희망폴에 등록된 경우라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안내

별첨 6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 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3, 4737, 4787
	서울 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송파구· 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 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6095
	서울 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02-2639-2403~240 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 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원구·강북구· 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 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금천구· 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88~9, 9393~4, 9396~7
중부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남구·연수구· 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
	인천 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032-540-5751 032-540-5742~5
	인천 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시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부천시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 · 파주시	031-920-3962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기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 · 포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031-231-7897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 광주시 · 양평군 · 이천시 · 여주시 · 하남시	031-739-3170, 3122, 4991, 4916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의왕시 · 군포시	031-463-0761~4, 0767, 0768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031-412-696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 · 오산시 · 안성시	031-646-1238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 · 화천군 · 홍천군 · 양구군 ·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 · 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 고성 · 양양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 · 횡성군	033-769-0943, 0946, 0960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 · 정선군 · 평창군	033-371-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사하구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 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 · 금정구 · 수영구 · 해운대구 · 기장군	051-760-7210~5
	부산 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 · 사상구 · 강서구	051-330-9951 ~9955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 · 함안군 · 의령군 · 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7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 · 사천시 ·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055-650-1811, 1814, 1818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 · 수성구 · 동구)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053-667-6036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척읍 중리국가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7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주청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6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 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 · 보성군 · 고흥군	061-720-9161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40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2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영암군 · 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 · 해남군 · 완도군 · 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 · 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 · 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 · 증평군 · 옥천군 · 영동군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 · 당진시 · 아산시 · 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 · 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 단양군	043-640-932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전청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 · 서천군 · 부여군 · 홍성군 · 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 · 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 · 서귀포시	064-710-4462, 4470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기획 · 편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인쇄 푸른바다
(02-2275-6035)